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도9667 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28. 선고 2009노17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